

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

다음 소송에 있어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 제 []3 조에 따라
변호사 「 []5 」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.

- 1. 상 대 방
- 2. 사 건 명
- 3. 법 원 및 사 건 번 호

년 월 일

○○○○장(관) 직인

주의사항

- 1.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
- 2.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(소송사무보고서)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.
- 3. 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(소송사무보고서)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4.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.